

1. 개정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 시행규칙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9조제5항에서 위임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등록의 원인 등으로 규정하고, 저장권에 관한 사항으로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채권액 및 이자 등으로 규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안 제5조)

「항만법」에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사무처리주체도 변경다. 인감증명 대체서류(안 제6조)

등록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인감을 대체할 서류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안 제8조의2)

등록 신청 시 등록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를 준공확인증명서,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 또는 확정판결서 등으로 정함
마. 존속기간 및 징수사용료 총액(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등록신청 시 기재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을 항만시설의 귀속여부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귀속 시에는 무상 사용기간과 그 기간 산정 시 산출하는 사용료의 총액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시에는 관리청의 결정 시까지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비치·보관하여야”를 “비치·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초본”을 “등·초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서류철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갑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3. 등록의 원인
4. 등록의 목적
5. 공유 또는 합유인 경우 그 지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가등기(假登記), 부기등기(附記登記), 예고등기(豫告登記)를 포함한다)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을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3. 등록의 목적

4. 채권액 및 이자

5. 공동담보의 등록목록

6. 존속기간

7. 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

8. 특약사항

9.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한 권리에 관한 것

제3조 중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 연월일”을 “금전, 물건의 수량, 연월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4조 중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을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구획하여야”를 “구획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하여 작성하되”를 “작성하되”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로, “간인을 하여야”를 “간인(間印)을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

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항만시설관리권 및”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으로, “저당권”을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으로, “인감을 제출하여야”를 “인감 또는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에 따라”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3. 민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2.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서
3.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채권자대위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저당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서
7. 대위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8. 등록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의3(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영 제27조제3호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귀속 항만시설: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2.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허가조건의 변경, 시설물의 철거 또는 항만시설로서의 용도폐지를 결정할 때까지

제8조의4(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영 제27조제5호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항만시설: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산정 시 산출하는 사용료의 총액
2.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

제9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2매이상”을 “2매 이상”으로, “간인하여야”를 “간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를 “영 제32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로, “명칭 · 주소”를 “명칭과 주소”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4조에 따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부분에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표시번호”를 “부분(副本)에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표시번호”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환부하여야”를 “다시 발급해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부기하여야”를 “부기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날인하여야”를 “날인해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본 교부신청서
[]초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항만시설 관리권의 등록번호 제 호		
	청구구분		
	용 도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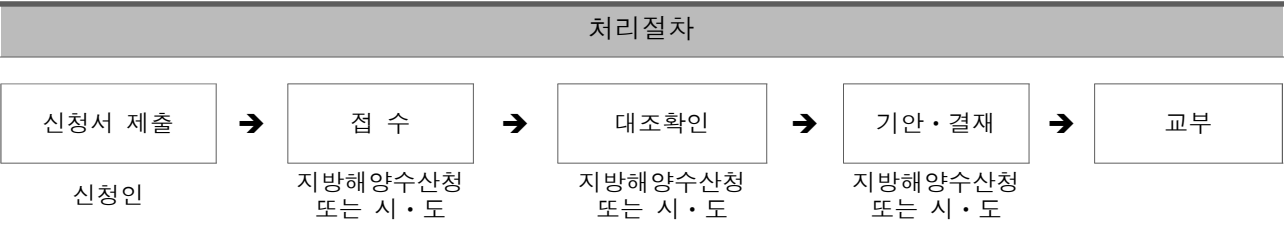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3조에 따라 위의 ([]등본 []초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100원
------	----	-------------



향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향만시설 관리권의 등록번호 제 호		
	열람의 목적		
	기타사항		

「향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만시설관리권등록부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5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향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향만시설 관리권의 표시	향만시설의 종류
	향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향만시설의 신축·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향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등록의 목적	
-----------	--

특 약	
-----	--

기 타	
-----	--

「향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 제58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만시설
관리권(저당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향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정하는 서류	수수료 500원
------	---	-------------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록필 통지	기타 통지

-----절-----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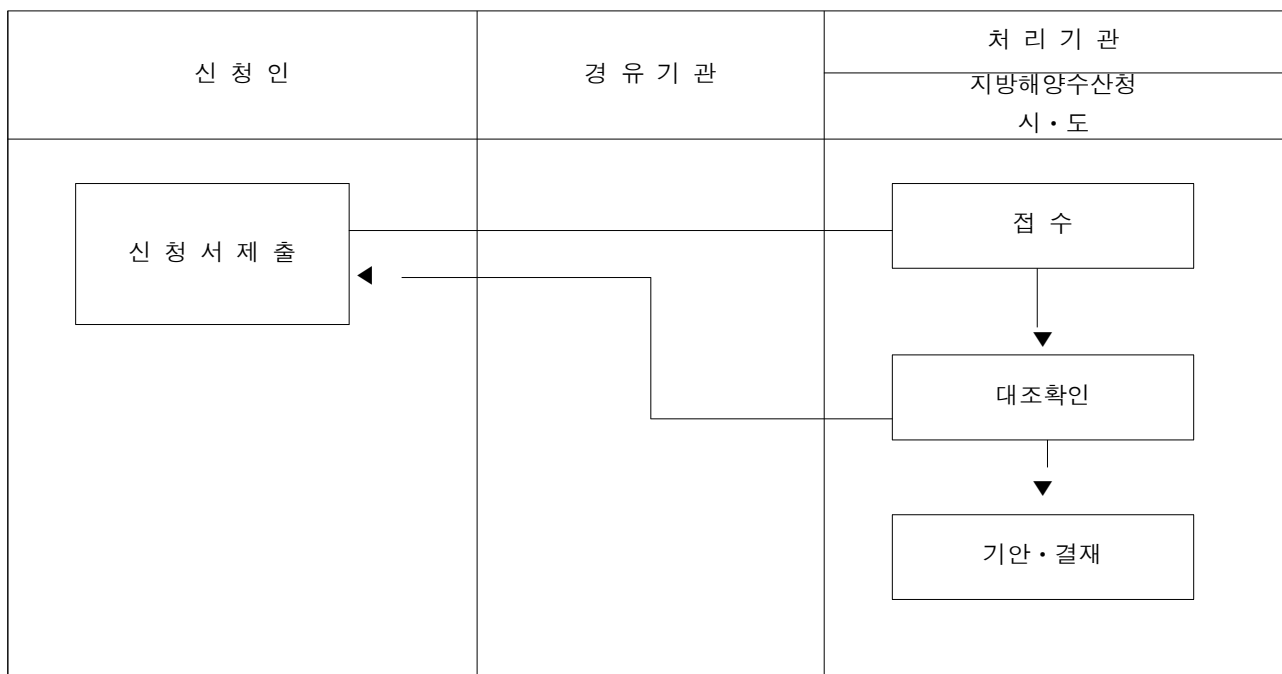
등록번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시 · 도 지 사

적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u>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u> 」----- ----- ----- <u>필요한</u> ----- -----.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다음 <u>각호</u> 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u>비치·보관하여야</u> 한다. 1. (생 략) 2. <u>등록신청서 ·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u> 3. (생 략) 4. 등록부의 <u>등 · 초본</u> 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 8. (생 략) <u><신 설></u>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 <u>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 -----. ② -- <u>각 호</u> ----- ----- ----- <u>비치·보관해야</u> ---- ----. 1. (현행과 같음) 2. <u>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서류철</u> 3. (현행과 같음) 4. ----- <u>등 · 초본</u> ----- ----- ----- 5. ~ 8.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u>갑구 사항란</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신 설>

을 적는다.

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3. 등록의 원인
4. 등록의 목적
5. 공유 또는 합유인 경우 그 지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가등기(假登記), 부기등기(附記登記), 예고등기(豫告登記)를 포함한다)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을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3. 등록의 목적
4. 채권액 및 이자
5. 공동담보의 등록목록
6. 존속기간
7. 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
8. 특약사항
9.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한 권리에 관한

제3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 연월
 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경우에
 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
 다.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
 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
 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
 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① (생 략)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날인
 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것

제3조(숫자등의 기재) -----
금전, 물건의 수량, 연월일 ---

 ----- 사용해야 -----
 --.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

 ----- 표시번호란과 표시란 ---

구획해야 ----.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작성하
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
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간인(間印)을 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생략)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④ -----
----- 납부
해야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

제6조(인감증명의 제출) -----
---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인감 또는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
--- 그렇지 않다.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

1.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2. (현행과 같음)
3. 민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의한 결의서

<신 설>

결의서

제8조의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증명서
2.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서
3.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채권자대위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저당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서

<신 설>

<신 설>

7. 대위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8. 등록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의3(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
기간) 영 제27조제3호의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관리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귀속 항만시설: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2
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2.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
시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허가의 취소, 허가조
건의 변경, 시설물의 철거 또
는 항만시설로서의 용도폐지
를 결정할 때까지
제8조의4(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
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영
제27조제5호의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항만시설관리권에 의
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은 다음과 같다.

제9조(등록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u>납부하여야</u> 한다. 다만,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인) 신청서의 용지가 <u>2매 이상인</u> 경우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u>간인하여야</u>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u>1인</u>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항만시설: 「항만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산정 시 산출하는 사용료의 <u>총액</u> 2.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재산의 <u>감정평가액</u> 제9조(등록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납부해야</u> -----. --- <u>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u>는 ----- ----- -----. 제10조(간인) ----- <u>2매 이상</u>----- ----- <u>간인해야</u> ----- ---. ----- ----- -- <u>1명</u>----- ---. 제12조(신청서의 조사) ----- -----
--	---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분에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 등록연월

---- 조사해야 -----.

제13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

----- 기재해야 -----.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2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

----- 명칭과 주소 -----
----- 기재해야 ----
----.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4조에 따라 -----

----- 기재해야 ----
--.

제16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

----- 부분(副本)에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표시번호 -----

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u>해양수산부장관</u>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u>환부하여야</u> 한다.	----- -- <u>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u>----- <u>다시 발급해야</u> ----- -----.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u>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맨뒷면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면과의 철목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u>부기하여야</u> 한다.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 <u>영 제47조제1항에 따라</u> ----- ----- ----- ----- ----- ----- <u>부기해야</u> -----.
제18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u>하여야</u> 한다.	제18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 ----- ----- <u>해야</u> ----- -----.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u>날인하여야</u> 한다.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 ----- ----- ----- ----- ----- <u>날인해야</u> -----.